

영광군 공고 제2021-928호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위촉직 위원들의 실질적 심의 참여 증진
- 위원 정수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자의 범위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안정적인 학교급식 관련 사업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한 식재료 유통·공급 추진

3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7조)
 -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 위원회 구성 등(제8조)

- 제8조제1항 “부위원장 정수 규정” 개정
- 제8조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당연직 위원 정수 규정,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분” 신설
- 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위촉직 위원” 신설
-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본문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
- 제8조제5항 삭제
-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2조)
 -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를 “군수는”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우선 위탁”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개정
- 지원센터의 기능(제13조)
 -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4. 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0. ~ 2021. 8. 9. (20일 간)

6.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농업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유통시설팀(☎ 350-4728, FAX 350-5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유통시설팀 담당
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4728, FAX
350-5599)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부군수
2.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군청 과장 3명
3.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교육지원청 과장 1명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영광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3. 영광군 소재 학교 영양(교)사
4. 영광군 어린이집연합회원

5. 영광군 친환경 농업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6항(종전의 제4항)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를 “군수는”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우선 위탁”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개정한다.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생략)</p> <p>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u>해당 업무 관련 실과장</u></p> <p>2. <u>해당 업무 관련 영광교육지원청과장</u></p> <p>3. <u>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u></p> <p>4. <u>학부모 단체</u></p> <p>5. <u>영광군 영양사 협회</u></p> <p>6. <u>농·축산 관련 단체</u></p> <p>7. <u>생산자 단체</u></p>	<p>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부군수
- 2.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군청 과장 3명
- 3.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교육 지원청 과장 1명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 2. 영광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 3. 영광군 소재 학교 영양(교)사
- 4. 영광군 어린이집연합회원
- 5. 영광군 친환경 농업인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 2
회에 한하여 연임-----

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 . -----
----- .

<삭제>

제12조(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

-----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
----- .

1. ~ 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